

지정번호: 제 호

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

상호

대표자 (생년월일)

소재지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소방청장

직인